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384

발의연월일: 2022. 7. 11.

발 의 자:김경만·강득구·강병원

김의겸 · 김홍걸 · 노웅래

양기대 • 윤건영 • 이동주

이병훈 · 주철현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 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따라서 변리사는 산업재산권과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직으로서 고결 성과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역할이 충실히 수행 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변리사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외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적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직업적 의무로 삼고자 함(안 제1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공익활동) 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.

②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5조의2(공익활동) ① 변리사는
	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
	에 참여하여야 한다.
	②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
	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
	변리사회가 정한다.